

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제3721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5. 11. 17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- 「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는 1999년 제정 이후 특별회계가 설치·운영되지 않아 본 조례의 유지 필요성이 낮으며, 조례 소관 부서인 정수과의 업무 관련성이 부족한바,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」를 폐지함

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- 나.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: 붙임
- 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라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5. 9. 24. ~ 10. 14. (20일)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 - 2) 부서협의결과
 - 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 없음
 - 나) 성별영향평가 : 해당 없음
 - 다)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
 - 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 : 환경부

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정수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명	정수과장 권이철
	팀장 직위·성명	수질검사팀장 장영진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환경서기 이하경(☎4485)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한강수계(漢江水系) 상수원(上水源)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(水質改善)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상수원”이란 「수도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.
2. “수도사업자”란 「수도법」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.
3. “오염부하량(汚染負荷量)”이란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(換算)한 것을 말한다.
4. “환경기초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 - 가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
 - 나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
 - 다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
 - 라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
 - 마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(이하 “공공폐수처리시설”이라 한다)
 - 바.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5. “상수원관리지역”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.
 - 가. 「수도법」 제7조에 따라 지정·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(이하 “상수원보호구역”이라 한다)
 - 나. 제4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수변구역(이하 “수변구역(水邊區域)”이라 한다)
 - 다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8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(이하 “특별대책지역”이라 한다)
6. “관리청”이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말한다.

제16조(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) 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특별회계는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리·운영한다.

제17조(특별회계의 세입·세출) ① 특별회계의 세입(歲入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 또는 시·도의 보조금
2.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3.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4. 차입금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
② 특별회계의 세출(歲出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22조 각 호(같은 조 제1호·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)의 사업에 드는 비용

2.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

③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·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「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김포시수질개선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05.12.8)

제2조 (세입)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·지방양여금
2.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3.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4. 차입금
5.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
제3조 (세출)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2.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3.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4.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 사업비
5. 하천·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
6.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의 수질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
제4조 (예산편성·결산 및 운용등)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·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 다만,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.

제5조 (전용금지)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제6조 (예비비)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.

제7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